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등〉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4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등	4
2. 체육시설업 등록 시 인허가의제 도입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5.
3. 회 부 일: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세제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이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부 사업자는 세제 혜택만 누리며 의무는 외면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법의 미비를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정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함.

아울러,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하려는 자가 운동시설 이외 고객 편의를 위한 식음료 시설, 목욕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허가의 제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를 통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영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 2제2항).

나.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호, 제32조제3항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등록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목욕탕, 식당과 같은 시설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안 제10조의2제2항), ②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신설), ③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0조제1호,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생략)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이용료</u>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u>시·도지사</u> 는 ----- ----- ----- ----- <u>다음 각 호</u> ----- ----- -----.
<신설>	1. <u>골프 대중화 취지에 적합한 이용료</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요건을 충족할 것</u> <u>2. 골프 카트, 경기보조원 등 부대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것</u> <u>3. 예약·취소, 기상조건에 따른 경기 운영 및 환불에 관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것</u> <u>4. 그 밖의 대통령령에 따른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u>
③ (생 략)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u><신 설></u> 1. ~ 8.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명령) ----- ----- ----- -----. <u>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요건을 위반한 때</u> <u>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u>
제32조(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32조(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생략)	2.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 -----. 제33조(청문)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40조(과태료)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현행법상 골프장업(등록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가

운데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에 대해 3년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¹⁾).

[골프장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회원제 골프장	196	184	177	163	157	154	156	152	153	153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290	301	311	348	357	371	376	385 (357)	386 (366)	388 (374)
합 계	486	485	488	511	514	525	532	537	539	54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374개의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보유세, 이용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대중형 골프장 지정 현황]

(‘25. 12월 기준, 단위: 개소)

총 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4	5	10	2	3	4	2	85
37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36	24	26	38	40	27	2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골프장 유형별 제세금 현황]

구분	세금종류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취득세	취득세			12%	4%	4%
보유세	재산세	토지	개발지	4% (분리과세)	0.2~0.5% (종합합산)	0.2~0.4% (별도합산)
			원형보전지	0.2~0.4%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건축물 등		4%	0.25	0.25%
	종부세	토지	개발지	없음	1~3% (종합합산)	0.5~0.7% (별도합산)
			원형보전지	0.5~0.7%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이용세	개별소비세			12,000원	12,000원
교육세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없음	
농어촌특별세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없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사정으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16.6%), 강설, 폭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 중단 시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12.1%) 등 대중형 골프장(355개)의 31.3%(111개)가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이 지정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자는 제재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② 지정 요건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③ 현행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있는바, 지방자치분권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제재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²⁾에 근거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그 실천을 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할 경우 지역 여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한 반면,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골프 대중화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법령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의 법률 명시와 관련하여, 현행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³⁾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① 문화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체육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 책정,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현행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비교]

근거	현 행	개정안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 충족	- 이용료 요건 - 부대 서비스(카트, 캐디 등)의 이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예약·취소, 기상조건에 따른 경기운영 및 환불에 관해 소비자 권익 보장 - 대통령령에 따른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
시행령	- 이용료 요건 - 표준약관 사용	-

다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의 법률 명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협회의 찬성의견과 경기도, 한국대중

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골프장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선택권 및 권익 보장 취지를 담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한국소비자협회는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은 카트와 캐디 이용을 강제하여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부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이용자가 카트, 캐디 등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정 요건에서 부대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① 카트, 캐디 등의 이용 여부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골프장의 지형적 특성상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② 예약·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요건은 현행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⁴⁾ 및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과 중복되는 규제이므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은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① 카트, 캐디 등의 선택제는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골프장의 입지 및 운영 여건 상 법적 수단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② 대중형 골프장은 현행 지정 요건에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지정 요건 위반 시 제재 조항 신설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은 대중형 골프장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사업자의 지정 요건 준수 유인이 약화되고 불공정한 약관 적용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2조제2항제6호⁵⁾는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장업의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30조는 시정명령 사유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을 추가함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취소’ 및 ‘골프장업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지정 요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취소’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2조제2항제6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5. (생략)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생략)

③ (생략)

[안 제32조 수정의견]

현 행	개정안	수 정 의 견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u><신 설></u> 1. ~ 8. (생 략)	제30조(시정명령) ----- ----- ----- ----- ----- ----- -----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요건을 위반한 때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 (생 략)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현 행	개정안	수 정 의 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생략) <u><신설></u>	③ 시·도지사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생략) ③ (개정안과 같음)

2. 체육시설업 등록 시 인허가의제 도입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 시 목욕장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19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체육시설업 등록시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협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 검토사항

등록 체육시설업자⁶⁾가 체육시설 외에 식당, 카페, 목욕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의 신속한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승인 시 목욕장업의 신고⁷⁾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신고⁸⁾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등록 체육시설업장 내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인

6) 등록 체육시설업 현황 (2024.12월 말 기준)

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563	539	15	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8)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관광진흥법」, 「온천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신고에 대한 인허가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9. (생략)

② (생략)

「온천법」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생략)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②~④ (생략)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② (생략)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④~⑥ (생략)

다만, 현행법⁹⁾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경승인'을 받으면 체육시설업장 공사 등을 위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체육시설업 등록 시 인허가의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항에 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 개정법률의 시행 준비 등을 위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